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신종 보건위기 대응 관련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범정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의료와 요양의 연계 및 재가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자살고위험군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및 청년 사회복지서비스 개발·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각각 폐지하며,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정책국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국립대학병원 및 지역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며,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연구개발 총괄·조정 업

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원 8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및 국립소록도병원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법무 업무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재난심리지원을 위한 인력 4명(8급 4명)을 보강하고,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 국립나주병원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 국립부곡병원의 정원 2명(9급 2명), 국립춘천병원의 정원 1명(9급 1명), 국립공주병원의 정원 1명(8급 1명) 및 국립재활원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책통계담당관과 정보화담당관을 통합하여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하고, 장애인 건강·돌봄 통합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건강과를 신설하며, 치매정책과를 노인건강과로 변경하는 등 보건복지부 하부조직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하

여 명칭변경 및 하부조직을 조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9급 2명)을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보건복지부에 임기제 공무원 정원 2명(9급 2명)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 제6호”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0호, 제21호 및 제21호의2부터 제21호의4호”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0호 및 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2호”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4호 및 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정책통계담당관,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국제협력담당관, 통상개발담당관 및 해외의료담당관”을 “국제협력담당관 및 통상개발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평가”를 “정보화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정보자원”을 “보건복지 정보기술 아키텍처 관리 등 정보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구축 및 운영”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소속 국립정신건강 센터 및 국립병원 정보화”를 “소속 국립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보건복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관한 사항 총괄
17. 보건복지 부문의 통계 개발·개선 및 통계발전계획의 수립·실시
18. 보건복지 관련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19.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0. 보건복지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21. 통계품질진단 및 통계기반정책관리에 관한 사항
2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 관련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23. 보건계정 및 복지 관련 사회계정 통계에 관한 사항
24. 국제기구 통계협력 및 요구통계 제공·관리
25. 보건복지백서 및 통계연보의 발간
26. 그 밖에 보건복지 관련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제10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제11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8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장애인자립기반과 및 장애인서비스과”를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서비스과 및 장애인건강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

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에 관한 사항
- 2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23. 발달장애인지원사업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⑦ 장애인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장애인건강권 법령에 관한 사항
- 2. 장애인 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 4. 재활병원 등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 5. 국립재활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항
- 8. 장애인 보조기기 및 의료비 지원 사항
- 9.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 중 “치매정책과”를 “노인건강과”로 한다.

제8조제7항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제23호 및 제2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정책 수립 및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8항제7호 중 “출산·양육에 유리한”을 “출산·양육 친화”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출산 장려를 위한”을 “임신·출산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출산”을 “모자보건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7호 및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환경 조성

27. 모자보건 관련 인구개발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28.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9항제2호 중 “아동복지법령”을 “아동복지법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의4 중 “중앙입양원 및 입양”을 “입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15.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6.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아동보호체계 관련 조직·인력의 확충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18. 아동보호체계 관련 조사, 연구, 통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9. 아동수당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아동건강·복지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1. 아동정책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2.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아동복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제10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아동”을 “취약계층아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아동권리 증진에 관한 사업 기획·총괄
13. 보호대상아동 가정형보호 정책 총괄 및 조정
14. 가정위탁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
15. 보호대상아동 면접 교섭에 관한 사항
16.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연장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17. 아동복지시설 정책 총괄 및 조정
18.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관한 사항
19.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0. 아동복지시설 경계선 지능장애 아동에 대한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
21.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2.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 실태조사 및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항
23.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그룹홈협의회 등 법인 관리에 관한 사

항

- 24.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 25.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및 자립정책 기획·총괄
- 26. 자립수당 정책 기획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27. 바람개비서포터즈 등 자립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 28.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지원금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29.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11항제1호 중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련”을 “관련 제도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아동학대”를 “아동학대 대응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아동학대”를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 등 아동학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학대 관련 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 17.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8.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19.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

제8조제12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관한 사항

22.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

제8조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정책과장”을 “노인건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치매”를 “치매 등 노인건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노인건강증진”을 “노인건강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치매 관련 연구”를 “치매 등 노인건강 관련 연구·조사”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노인 건강·돌봄 연계 기획에 관한 사항

제10조제3항제3호 중 “기획 전문위원회 및 재정·통계”를 “기획·재정·통계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사항의 후속조치 관리

12.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3. 사회보장위원회 홍보에 관한 사항

14.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15. 사회보장 관련 정책의제 발굴 및 공론화

16.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분석”을 “분석과 편중·누락 방지 등 제도개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립·조정 및 평가”를 “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부

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수집·분석·활용에 관한 사항
1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사회보장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및 관리

제14조제4항 중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보건산업해외진출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혁신의료기기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⑨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업의 육성 및 지원
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총괄
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조사 및 연구
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제협력
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외 홍보
9.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항

제37조제2항 중 “정보화담당관·보건복지상담센터장”을 “보건복지상담센터장”으로, “피부과장·안이비인후과장 및 제21조의3제2항의 혈액안전감시과장”을 “피부과장·안이비인후과장, 제21조의3제2항의 혈액안전감시과장 및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두는 과장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장 1명”으로 한다.

제39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립대학병원 및 지역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⑨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필수의료지원관) ① 필수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보건복지부령 제549호 보건복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864”를 “868”로 하고, 일반직 계 “854”를 “858”로 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84”를 “290”으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96”을 “94”로 하며,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6”을 “68”로 하고,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33”을 “34”로 하며, 보건주사보 “10”을 “9”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5”를 “4”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6”을 “5”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866”을 “870”으로 하고, 일반직 계 “856”을 “86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84”를 “290”으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96”을 “94”로 하며,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6”을 “68”로 하고,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약무주사보 또는 간호

주사보 “33”을 “34”로 하며, 보건주사보 “10”을 “9”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5”를 “4”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6”을 “5”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총계 “335”을 “338”로 하고, 일반직 계 “335”을 “33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22”를 “325”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중 총계 “186”을 “184”로 하고, 일반직 계 “186”을 “18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80”을 “178”로 하고, 같은 표 3호 중 총계 “188”을 “186”로 하며, 일반직 계 “188”을 “186”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85”를 “183”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총계 “120”을 “119”로 하고, 일반직 계 “120”을 “11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18”를 “117”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총계 “133”을 “132”로 하고, 일반직 계 “133”을 “13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31”를 “130”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22”를 각각 “220”으로 하고, 행정서기 “7”을 “6”으로 하며, 방호서기보 “6”을 “5”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58”을 각각 “356”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22”를 “320”으로 한다.

별표 11 및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

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2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보건복지부의 정원 8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관리운영9급 1명)과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정원 8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3명, 관리운영9급 1명), 국립소록도병원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 및 국립재활원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및 국립재활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9조 관련)

1. 제39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2. 삭제

3. 제39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9월 1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 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2

4. 삭제

5. 제39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7월 6일)

총계	5
일반직 계	5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 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2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전산주사보	2

· 방송통신주사보 · 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행정서기 · 보건서기 또는 전산서기	1
6. 제39조제7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2월 22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전산주사보 · 약무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간호주 사보	1
7. 제39조제8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8. 제39조제9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 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1

[별표 12]

보건복지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2항 및 제42조제3항관련)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준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20
일반직 계	20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3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9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1
5. 필수의료지원관(준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6. 필수의료총괄과(준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7
일반직 계	7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1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3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1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획조정실) ①·② (생략)	제3조의2(기획조정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책기획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9호까지, 제27호 및 제28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③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제6호----- ----- -----.
④ 국제협력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0호, 제21호 및 제21호의2부터 제21호의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0호 및 제21호----- ----- ----- -----.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2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4호 및 제22호----- ----- -----.
⑥ 기획조정실에 정책통계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정보보호팀, 보건복지상담센터,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⑥ ----- 정보통계담당관----- ----- -----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통상개발담당관 및 해외의료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정책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 부문의 통계 개발
· 개선 및 통계발전계획의 수립·실시
2. 보건복지 관련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3.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보건복지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5. 통계품질진단 및 통계기반정책관리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 관련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7. 보건계정 및 복지 관련 사회

----- 국제협력담당관 및 통상개발담당관-----

-----.

<삭 제>

<u>계정 통계에 관한 사항</u> 8. <u>국제기구 통계협력 및 요구 통계 제공·관리</u> 9. <u>보건복지백서 및 통계연보의 발간</u> 10. <u>그 밖에 보건복지 관련 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u> ⑧ <u>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u> 1. <u>보건복지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평가</u> 2. ~ 4. (생략) 5. <u>정보화 사업관련 컨설팅 및 계약업무의 지원</u> 6. <u>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7. <u>보건복지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및 운영</u> 8. <u>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u> 9. <u>삭제</u> 10. <u>보건복지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u> 11. ~ 13. (생략)	⑧ <u>정보통계담당관</u>----- -----. 1. ----- -- <u>정보화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u> 2. ~ 4. (현행과 같음) <u><삭제></u> 6. <u>보건복지 정보기술 아키텍처 관리 등 정보자원</u>----- ----- <u><삭제></u> <u><삭제></u> 10. <u>보건복지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11. ~ 13. (현행과 같음)
---	---

14. 삭 제

15. 소속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병원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5. 소속 국립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16. 보건복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관한 사항 총괄

17. 보건복지 부문의 통계 개발
· 개선 및 통계발전계획의 수
립 · 실시

18. 보건복지 관련 통계업무의
종합 · 조정

19.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0. 보건복지통계의 작성 ·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 관리

21. 통계품질진단 및 통계기반
정책관리에 관한 사항

2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의 통계 관련 예산의 사전검
토 및 조정

23. 보건계정 및 복지 관련 사회
계정 통계에 관한 사항

24. 국제기구 통계협력 및 요구
통계 제공 · 관리

25. 보건복지백서 및 통계연보
의 발간

<신 설>

⑨ (생 략)

⑩ 보건복지상담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 8. (생 략)

<신 설>

⑪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 9. (생 략)

10. 비정규직 관리업무 총괄

11. ~ 15. (생 략)

⑫ ~ ⑰ (생 략)

⑱ 해외의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업의 육성 및 지원

26. 그 밖에 보건복지 관련 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

⑨ (현행과 같음)

⑩ -----

--.

1. ~ 8. (현행과 같음)

9.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⑪ -----
-----.

1. ~ 9. (현행과 같음)

<삭 제>

11. ~ 15. (현행과 같음)

⑫ ~ ⑰ (현행과 같음)

<삭 제>

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총괄

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조사 및 연구

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제협력

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외 홍보

9.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장애인정책국) ① (생략)

② 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및 장애인서비스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생략)

④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 (생략)

제7조의2(장애인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서비스과 및 장애인건강과-----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4. ~ 6. (생략)

7. 국립재활원의 운영 및 지원

8. ~ 16. (생략)

⑤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장애인보조기기의 개발·보급 관련 서비스전달체계의 지원·육성

10. 장애인보조기기의 표준화, 품질관리 및 산업화 지원

11. ~ 17. (생략)

⑥ 장애인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삭제

6. ~ 9. (생략)

10. 장애아동 돌봄 및 발달재활 서비스에 관한 사항

11. ~ 20. (생략)

<신설>

<신설>

<삭제>

4. ~ 6. (현행과 같음)

<삭제>

8. ~ 16. (현행과 같음)

⑤ -----
-----.

1. ~ 8.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11. ~ 17. (현행과 같음)

⑥ -----
-----.

6. ~ 9. (현행과 같음)

<삭제>

11. ~ 20. (현행과 같음)

2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에 관한 사항

2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u><신 설></u>	23. <u>발달장애인지원사업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u>
<u><신 설></u>	⑦ <u>장애인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장애인건강권 법령에 관한 사항</u> 2. <u>장애인 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3. <u>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관한 사항</u> 4. <u>재활병원 등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u> 5. <u>국립재활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6. <u>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7. <u>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항</u> 8. <u>장애인 보조기기 및 의료비 지원 사항</u> 9. <u>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에 관한 사항</u>
제8조(인구정책실) ① ~ ⑤ (생략) ⑥ 인구정책실에 인구정책총괄	제8조(인구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과, 출산정책과, 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 아동학대대응과,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치매정책과,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및 보육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인구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1의2. (생략)

<신설>

22.·23. (생략)

⑧ 출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출산 장려를 위한 홍보전략의 수립 및 시행

9. 출산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10. ~ 23. (생략)

노인건강과-----

⑦ -----

1. ~ 21의2. (현행과 같음)

22.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정책 수립 및 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23.·24. (현행 제22호 및 제23호와 같음)

⑧ -----

1. ~ 6. (현행과 같음)

7. 출산·양육 친화 -----

8. 임신·출산 지원 -----

9. 모자보건사업 -----

10. ~ 23. (현행과 같음)

<u>24. 인공임신중절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u> 25. · 26. (생략) <u><신설></u> <u><신설></u> ⑨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u>아동복지법령</u>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3. (생략) <u><신설></u> 5. · 6. (생략) 7. <u>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에 관한 사항</u> 8. <u>아동복지시설, 그룹홈 등 운영 · 지원에 관한 사항</u> 9. ~ 10의3. (생략) 10의4. <u>중앙입양원 및 입양기관 · 단체에 관한 사항</u> 11. <u>아동발달지원계좌에 관한 사항</u> 12. (생략)	<u>24.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환경 조성</u> 25. · 26. (현행과 같음) <u>27. 모자보건 관련 인구개발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u> <u>28.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관한 사항</u> ⑨ ----- -----. 1. (현행과 같음) 2. <u>아동복지법</u> 등 ----- ----- 3. (현행과 같음) <u>3의2. 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u> 5. · 6.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9. ~ 10의3. (현행과 같음) 10의4. <u>입양</u> ----- ----- <u><삭제></u> 12. (현행과 같음)
--	---

13.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
동그룹홈협의회에 관한 사항

14. 삭 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⑩ 아동권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권리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삭 제>

15.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6.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아동보호체계 관련 조직·
인력의 확충 및 효율적 운용
에 관한 사항

18. 아동보호체계 관련 조사, 연
구, 통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9. 아동수당의 운영에 관한 사
항

20. 아동건강·복지증진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21. 아동정책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2.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아동복지 제도 개선
에 관한 사항

⑩ -----
-----.

1. 아동권리 증진에 관한 사업
기획·총괄

2. <u>아동권리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u>	<u><삭 제></u>
3. <u>삭 제</u>	
4. <u>아동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u>	<u><삭 제></u>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u>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삭 제></u>
7. <u>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u>	<u><삭 제></u>
8. <u>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u>	8. <u>취약계층아동</u> ----- -----
9. <u>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관한 사항</u>	<u><삭 제></u>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u>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u>	<u><삭 제></u>
12. <u>아동안전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신 설></u>	13. <u>보호대상아동 가정형보호 정책 총괄 및 조정</u>
<u><신 설></u>	14. <u>가정위탁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u>
<u><신 설></u>	15. <u>보호대상아동 면접 교섭에 관한 사항</u>
<u><신 설></u>	16. <u>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연장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항

17. 아동복지시설 정책 총괄 및 조정

18.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관한 사항

19.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운영 · 지원에 관한 사항

20. 아동복지시설 경계선 지능 장애 아동에 대한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

21.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2.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 실태조사 및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항

23.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그룹홈협의회 등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24.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5.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및 자립정책 기획 · 총괄

26. 자립수당 정책 기획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27. 바람개비서포터즈 등 자립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에 관한

<신 설>

<신 설>

⑪ 아동학대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대책의 수립·시행

2.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5. (생 략)

<신 설>

7.·8. (생 략)

9. 아동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관리

10. (생 략)

11.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아동학대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사항

28.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지원금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9.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

⑪ -----
-----.

1. 아동학대 -----

2. ----- 관련 제도 및 -----
--

3. 아동학대 대응 및 -----

4.·5. (현행과 같음)

5의2.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7.·8. (현행과 같음)

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등 아동학대 -----

10. (현행과 같음)

11. 아동학대 관련 시스템-----

12. (생략)

13.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14. ~ 16.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⑫ 노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0. (생략)

<신설>

<신설>

⑬ ~ ⑮ (생략)

⑯ 치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3. 치매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생략)

5. 치매의 예방 및 관리 등 노인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12. (현행과 같음)

13. 아동학대 -----

14. ~ 16. (현행과 같음)

17.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9.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

⑫ -----
-----.

1. ~ 20. (현행과 같음)

21.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관한 사항

22.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

⑬ ~ ⑮ (현행과 같음)

⑯ 노인건강과장-----
-----.

1. · 2. (현행과 같음)

3. 치매 등 노인건강 -----

4. (현행과 같음)

5. ----- 노인 건강관리-----

6. ~ 9. (생략) 10. <u>치매 관련 연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u> <u><신설></u> ⑰ ~ ⑲ (생략) 제10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①·② (생략) ③ 사회보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3.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 <u>기획 전문위원회 및 재정·통계 전문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u> 4. ~ 6. (생략) 7. <u>사회보장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및 관리</u> 8. <u>사회보장제도 정책 분석 및 연구·개발</u> 9.·10. (생략) <u><신설></u> <u><신설></u>	6. ~ 9. (현행과 같음) 10. <u>치매 등 노인건강 관련 연구·조사</u> ----- 11. <u>노인 건강·돌봄 연계 기획에 관한 사항</u> ⑰ ~ ⑲ (현행과 같음) 제10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2. (현행과 같음) 3. ----- ----- <u>기획·재정·통계 관련</u> ----- ----- 4. ~ 6. (현행과 같음) <u><삭제></u> 8. <u>사회보장</u> ----- ----- 9.·10. (현행과 같음) 11. <u>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사항의 후속조치 관리</u> 12. <u>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조정</u>에 관한 사항
--	---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사회보장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6. 사회보장 편중·누락 방지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 9. (생 략)

⑤ 사회보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의 후속조치 관리

3. · 4. (생 략)

5. 사회보장제도 평가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사회보장위원회 홍보에 관한 사항

14.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15. 사회보장 관련 정책의제 발굴 및 공론화

16.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④ -----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7. ~ 9. (현행과 같음)

⑤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4. (현행과 같음)

5. -----
분석과 편중·누락 방지 등 제도개선-----

6. -----
----- 평가-----

<u>7. 사회보장위원회 홍보에 관한 사항</u> <u>8.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u> <u>9.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제14조(보건산업정책국) ① ~ ③ (생 략) ④ 보건산업정책국에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산업진흥과, 의료정보정책과, <u>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u>,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및 재생의료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생 략) ⑥ 보건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 략) <u><신 설></u>	10. <u>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수집·분석·활용에 관한 사항</u> 11. <u>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u> 12. <u>사회보장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및 관리</u> 제14조(보건산업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u>, <u>보건산업해외진출과</u>----- ----- -----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14. (현행과 같음) <u>15. 혁신의료기기 제도개선</u>

⑦ · ⑧ (생략)

<신설>

관한 사항

⑦ · ⑧ (현행과 같음)

⑨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업의 육성 및 지원

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총괄

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조사 및 연구

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제협력

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외 홍보

9.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

⑨ · ⑩ (생략)

제3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제2조제3항의 홍보기획담당관, 제3조의2제6항의 정보화담당관 · 보건복지상담센터장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7조제6항의 복지정보운영과장, 제7조의2제2항의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제8조제6항의 출산정책과장, 제20조제3항의 피부과장 · 안이비인후과장 및 제21조의3제2항의 혈액안전감시과장을 지정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9조(한시정원) ① 삭제

② ~ ④ (생략)

⑤ 보건의료 연구개발 총괄 · 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환자 유치에 관한 사항

⑩ · ⑪ (현행 제9항 및 제10항과 같음)

제3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보건복지상담센터장 -----

----- 피부과장 · 안이비인후과장, 제21조의3제2항의 혈액안전감시과장 및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두는 과장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장 1명---.

제39조(한시정원)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9월 1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11의 정원 2명(보건연구관 1명, 보건연구사 1명)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⑥·⑦ (생략)

<신설>

<신설>

⑥·⑦ (현행과 같음)

⑧ 국립대병원 및 지역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⑨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

제40조(의료보장심의관 등) ① 의
료보장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
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
등급으로 한다.

② 예비급여과장 및 의료보장관
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
관으로 보한다.

③ 의료보장심의관·예비급여
과 및 의료보장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
2와 같다.

<신 설>

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
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
다.

<삭 제>

제42조(필수의료지원관) ① 필수
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
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
급으로 한다.

②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
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864	868	+4	
일	반	직	계	•	•		
				•	•		
				854	858	+4	
				•	•		
				•	•		
행	정	사	무	관	•	•	
•	사	회	복	지	사	무	관
•	보	건	사	무	관	•	•
•	전	산	사	무	관	•	•
•	약	무	사	무	관	•	•
•	시	설	사	무	관	•	•
•	공	업	사	무	관	•	•
•	관	•	간	호	사	무	관
•	또	는					
방	송	통	신	사	무	관	
				284	290	+6	
•				•	•		
•				•	•		
행	정	주	사	또	는	사	회
•	•	•	•	96	94	-2	
•				•	•		
•				•	•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 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사 · 시 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 ·	<u>66</u> · ·	<u>68</u> · ·	+2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 통신주사보 · 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 ·	<u>33</u> · ·	<u>34</u> · ·	+1
보건주사보 · ·	<u>10</u> · ·	<u>9</u> · ·	-1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 ·	<u>5</u> · ·	<u>4</u> · ·	-1
사무운영서기보 · ·	<u>6</u> · ·	<u>5</u> · ·	-1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2]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866</u>	• <u>870</u>	+4
일반직 계	• • <u>856</u>	• • <u>860</u>	+4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 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 관 · 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u>284</u>	• <u>290</u>	+6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 <u>96</u>	• <u>94</u>	-2
	•	•	
	•	•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 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사 · 시 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 ·	<u>66</u> · ·	<u>68</u> · ·	+2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 통신주사보 · 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 ·	<u>33</u> · ·	<u>34</u> · ·	+1
보건주사보 · ·	<u>10</u> · ·	<u>9</u> · ·	-1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 ·	<u>5</u> · ·	<u>4</u> · ·	-1
사무운영서기보 · ·	<u>6</u> · ·	<u>5</u> · ·	-1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1. 국립정신건강센터	•	•	
총계	<u>335</u>	<u>338</u>	+3
일반직 계	<u>335</u>	<u>338</u>	+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22</u>	<u>325</u>	+3
•	•	•	
2. 국립나주병원	•	•	
총계	<u>186</u>	<u>184</u>	-2
일반직 계	<u>186</u>	<u>184</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80</u>	<u>178</u>	-2
•	•	•	
3. 국립부곡병원	•	•	
총계	<u>188</u>	<u>186</u>	-2
일반직 계	<u>188</u>	<u>186</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85</u>	<u>183</u>	-2

.	.	.	
4. 국립춘천병원	.	.	
총계	<u>120</u>	<u>119</u>	-1
일반직 계	<u>120</u>	<u>119</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18</u>	<u>117</u>	-1
.	.	.	
5. 국립공주병원	.	.	
총계	<u>133</u>	<u>132</u>	-1
일반직 계	<u>133</u>	<u>132</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31</u>	<u>130</u>	-1
.	.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국립소록도병원 공무원정원표(제36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222</u>		<u>220</u>	-2	
일반직 계			<u>222</u>		<u>220</u>	-2	
	.		.		.		
	.		.		.		
행정서기			<u>7</u>		<u>6</u>	-1	
	.		.		.		
	.		.		.		
방호서기보			<u>6</u>		<u>5</u>	-1	
	.		.		.		
	.		.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국립재활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9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358</u>	• <u>356</u>	-2
일반직 계	<u>358</u>	<u>356</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22</u>	<u>320</u>	-2
•	•	•	